

청탁금지법상 교통편의 수수 허용범위 검토

차현숙 · 김정대



청탁금지법상 교통편의 수수 허용범위 검토

연구자: 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정 대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CONTENTS

Issue Paper

I. 검토 배경 및 목적 04

II. 검토 범위 05

III. 관계 법령 06

1. 청탁금지법 06

2. 청탁금지법 시행령 07

3. 실지·현장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 08

IV. 교통편의 수수 관련 주요 질의 사례 15

V. 교통편의 수수 허용 범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19

VI. 허용 범위 판단 기준 20

VII. 입법적 해결 방안 검토 22



I. 검토 배경 및 목적



- 청탁금지법이 시행(2016.9.28.)된 지 1년이 지났다.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를 제재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농축산물이나 화훼 등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공직자와 국민간의 소통 위축, 처벌법규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규정의 모호성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 해설집 등을 통해 부정청탁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범위에 대해 속칭 3·5·10으로 일컬어지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등에 대한 관심 및 논의는 많이 있었으나,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통편의와 그 수수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정책품질의 향상이나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현장 행정이 강조되어 왔고,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강화될 수 밖에 없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민원 해결이나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행정조사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현장 활동이 빈번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교통편의를 수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허용될 수 있는 교통편의 수수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 검토 범위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고에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통편의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법령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사례 등을 분석·검토함으로써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괄적인 기준을 생각해 봄으로써 향후 공직자등의 **현장행정 서비스의 품질 저하나 업무 수행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한다.

Ⅲ. 관계 법령



1.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실지·현장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물건 등을 조사·검증하는 방법

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마.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實地) 지도·조사를 하게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자. 석탄산업법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掘)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④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차. 주택도시기금법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또는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카. 철도사업법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29조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5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열거된 법령 이외에도 다수의 법령에서 실지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IV. 교통편의 수수 관련 주요 질의 사례¹⁾



〈사례 1〉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신용보증의 가부 결정을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업장이 도서(島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하고 신청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 2〉

건설관련 현장점검을 위해 발주처 직원(공무원), 감리단 직원(공무수행사인), 시공업체 직원(민간인)이 같은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 3〉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 심사를 위해 대상 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심사원들이 업체로부터 일부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심사를 위해 업체로 들어갈 때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심사 완료 후 돌아올 때에는 일반 택시는 물론 콜택시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 업체가 위치해 있음

1) 권익위 홈페이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요청된 사례

〈사례 4〉

공공기관 직원이 세미나 참석차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해당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세미나 일정이 지연되어 행사 종료 후 서울행 KTX(출장 전 왕복으로 이미 예매)를 늦지 않게 타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한 관용차량을 KTX역사까지 제공받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 5〉

민간기업 직원이 공직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산간오지에 위치하여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장소)에 출장을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공직자가 출장 장소 인근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혼자 이동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현지로 이동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 6〉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방문시 의회 차량이 부족하여 집행부인 도청이나 교육청 등의 관용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 7〉

민간업체 직원이 공무원과 함께 원격지에 있는 장비를 점검하러 함께 출장을 가는데, 민간업체 직원은 점검에 필요한 무거운 장비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데, 업체 직원의 차량에 공무원이 동승하여 이동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 8〉

기관 감사 기간 중 감사관들의 출퇴근이나 식사 편의를 위해 피감 기관의 공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 9〉

감사원 감사관이 군부대로 감사를 나오면서 차량지원을 부탁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 10〉

공무원이 외국 출장시 계약업체에서 공항과 숙소, 해당업체의 현지 공장과 숙소간 이동시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제공받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외국 현지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안전 운전에 문제 발생)

〈사례 11〉

도서(島嶼)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설비에 대해 언론사에서 취재를 가는 경우 해당 도서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들어갈 일이 있는 경우 통상 선박을 빌려서 이동하는데, 해당 언론사 기자가 선박에 동승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 12〉

해안가에 위치한 발전소에 현장점검을 가는데, 발전소가 KTX역으로부터 승용차로 약 1시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 해당 방문기관으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례 13〉

취재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언론사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사례 14〉

공공기관 지사가 격오지는 아니나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은 곳(터미널에서 지사까지 하루에 버스 1대)에 위치한 경우 상급기관 공직자의 업무상 방문시 터미널이나 역으로 마중나가 지사까지 차량지원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사례 15〉

방송사의 요청으로 다큐멘터리 촬영시 공공기관에서 방송국 리포터에게 촬영장소까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사례 16〉

지자체에서 인허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허가 신청서 접수시 현장 확인을 위해 민원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현지 출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V. 교통편의 수수 허용 범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교통편의)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상규상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될 것으로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서 살펴보면 사례 1), 사례 3), 사례 5), 사례 10), 사례 11), 사례 14)의 경우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나머지 사례들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VI. 허용 범위 판단 기준



-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교통편의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상규에 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회상규 해당 요건에 대해 검토해 본다.
- 통상 사회상규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판례)를 말하고,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등 수수의 동기나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청탁금지법 해설집)해야 할 것이다.
-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해당하기 위한 일반적인 검토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상규 해당 요건〉	〈교통편의 수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수수의 동기·목적	▶ 개인적인 편의가 아닌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당사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에게 제공받는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만 허용
■ 수수 금품의 가액 (교통편의 제공 범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예시) 실지조사 종료 후 공무원의 거주지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불가할 것임
■ 청탁과 결부	▶ 실지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허용 불가

- 사회상규 검토 기준과 허용 요건(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수단 이용시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실지조사 현장이 산간 오지,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대규모 공사현장의 특정 지점 등에 있어 당사와 동행하지 않으면 실지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② 대중교통(버스, 기차)은 물론 택시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현장이 위치한 경우
- ③ 조사 현장이 험지에 위치하여 일반 차량이 아닌 4륜 구동 등 특정 차량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 ④ 보안상의 이유로 지정된 차량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경우
 - ※ 발전소, 민통선, 군사시설 등
- ⑤ 현장까지 이동경로가 매우 복잡하거나, 부득이하게 일몰 이후 조사를 하는 경우
- ⑥ 조사 현장이나 현장 근처로 가능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거나 매우 드문 경우
 - ※ 탑승을 위해 수 시간 대기해야하는 경우

- 물론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추가적으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경우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VII. 입법적 해결 방안 검토



-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의 종류로 일정가액 범위내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만 규정되어 있고, 교통편의는 배제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공되는 교통편의가 사회상규에 해당하거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편의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공무원의 출장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편의 수수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뒤따른다.
- 과거 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추어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편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교통편의를 음식물과 함께 규정하였으나, 청탁금지법에서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로 한정하였다.

〈과거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비교〉

공무원 행동강령('16.9.28. 이전)	청탁금지법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선물”이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p> <p>4.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p> <p>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p> <p>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p>

공무원 행동강령('16.9.28. 이전)	청탁금지법
<p>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 부터 <u>급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u>(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u>음식물 또는 편의</u></p>	<p>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u>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u>음식물·경조사비·선물</u>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가액범위 안의 금품등</u></p> <p>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u>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u></p>
<p>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p> <p>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p> <p>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p>	

- 실제로 공직자의 업무수행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하는 식사나 직무관련자로 부터의 선물보다는 교통편의가 보다 빈번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식사나 선물보다는 교통편의 허용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
<p>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u>음식물·경조사비·선물</u>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p>	<p>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u>음식물·경조사비·선물·교통편의</u>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u>거리</u> 범위 안의 금품등</p>

〈청탁금지법 개정안 예시〉

음식물·경조사비·선물·교통편의 등의 가액·거리 범위(제17조 관련)

구분	가액·거리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4. 교통편의: 제공자가 제공하는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동수단에 동승 또는 편승하는 것	12km 또는 4시간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교통편의의 거리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②

청탁금지법상 교통편의 수수 허용범위 검토

발행일 2017년 9월 30일

발행인 이익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63-1 93360

청탁금지법상 교통편의 수수 허용범위 검토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http://www.klri.re.kr>



ISBN 978-89-6684-763-1
값 5,500원